

2023년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2. 27.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대상:** 만19세 ~ 만34세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
 - ※ 예비세대주: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하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
- 대출 실행 1개월 이내 성남시에 전입신고 예정인 자 포함
- **사업규모:** 50호
- **신청기간:** 2023. 2. 27.(월) 09:00 ~ 모집 완료시까지
 - ※ 대상가구 50호 모집 완료시 조기종료 됩니다.
- **용자지원 조건**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031-740-6644)
 - **대출한도:**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이 사업은 협약상품으로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대출 시에만 지원 가능함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및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본인부담
 - **대출금리:** MOR(기준금리) + 1.5% 【고정금리·변동금리 중 택1】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 **성남시 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3%이내(본인 부담금리: 연 3% 초과분)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 ※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기한 연장 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성남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만34세를 초과하였거나, 제외대상자, 중단사유,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2. 자격요건

- 신청대상자: 만19세 ~ 만34세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학생, 취업준비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 단, 주거급여 수급자와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성남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3. 신청 및 대출절차

| | | |
|------------------------------|---------------------------------|--------------------|
| 대상자 신청 (신청인 → 市) | 市에 대출신청 추천 신청 | 온라인 접수 (市 홈페이지) |
| | ↓ | |
| 대상자 적격심사 (市)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2주 소요) |
| | ↓ | |
| 대상자 추천 통보 (市 → 협약은행, 신청인) | 대출신청 적격여부 통보, 추천서 발급 | 문자·전화 통보 |
| | ↓ | |
| 계약 체결 (신청인 ↔ 해당주거지) | 임대차계약서 작성 | 대상통보 후 3개월 이내 |
| | ↓ | |
| 대출 신청 (신청인 → 협약은행)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신청) | NH농협은행 지정 지점 방문 |
| | ↓ | |
| 대출 심사 (협약은행) | 대출자격, 지원가능주택 등 대출가능여부 심사 | 2주 정도 소요 |
| | ↓ | |
| 대출 실행 (협약은행 → 신청인, 市) | 대출실행여부 통보 및 대출금 집행 | 1주 정도 소요 |

※ 성남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농협 성남시지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선정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거침

☞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온라인신청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모든 자료는 스캔 후 하나의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첨부 불가)

□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공통서류

1) 지원신청서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입력)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 (별도작성 필요)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7) 전국기준 2021년~20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기재)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근로 청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2022년도 연말정산 자료 미확정시 2021년도 자료로 대체 가능

2)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 현재 재직중인 근무지 기준으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학생, 취업준비생 등(청년 소득 없는 경우)

1) 청년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2) 부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부합 시 선착순 선정
- 선정결과: 접수 2주 후부터 개별통보(UMS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 ※ 성남시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임대차계약이 안된 경우 선정 취소됨
 -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당해연도 사업 신청 불가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 중앙정부 및 경기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청년(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차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사업 등

□ 중단사유

- 이차지원 중단 사유

| 이차지원 중단 사유 | 중단일 |
|------------------------------------|--------------|
| 대출실행 후 타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주택에 미전입 | 대출실행일 |
| 성남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 | 주민등록 전출일 |
| 1주택 이상 보유 | 주택 취득일 |
| 주거급여 수급 | 주거급여 선정일 |
|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목적물 변경은 제외)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 또는 취소 및 환수사유에 해당 | 사유발생일 |

- 매 분기별 자격요건 확인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차 미지원 (기 지원금 환수) 및 이차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 연장은 불가

□ 대출취소 및 환수 사유

-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3)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 5) 이자중단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대출취소시 기지원 된 대출지원금(임차보증금+이자지원금) 및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기타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출 유효기간은 선정 후 최대 90일로, 이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셔야 합니다.
- 1차 선정을 받았더라도 은행 대출심사 시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추천 후 대출 미신청시 당해연도에는 해당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 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 **신청문의: 성남시 청년정책과(☎ 031-729-8503),**
대출 관련 문의: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4)

붙임 신청서 양식 각 1부.

붙임**제출서류 서식(일체)****2023년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2023- - | 접수일자 | 2023. . |
| 신청유형 | <input type="checkbox"/> 근로청년 <input type="checkbox"/> 학생.취업준비생 | | |
| 계약유형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1회 갱신 <input type="checkbox"/> 2회 갱신 | |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상 주소 (도로명주소) | | (연락처) (전자메일) |
| 혼인여부 |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 | |
| 주택소유여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 타 주거지원정책 수혜여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 연소득금액 | 금 원 (2022년 말 기준)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부모 | | |
| 임차(예정) 물건지 주소 | * 임차물건지 주소가 확정이 안된 경우 : '미정'으로 기재 | | |
|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기관의 현지 실태조사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2023년 월 일 | |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 |
| 구비서류 | 1.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5.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기재)(2021년~2023년 기준)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현재 근무지),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2022년 연말정산 미확정시 2021년도 서류로 대체 가능, 7. 사실증명원(청년 소득 없는 경우) | | |
| 성 남 시 장 귀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성남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자 심사 선정 및 용자추천 대상자 금융기관 통보, 대출현황 및 자격요건 유지 여부 파악과 통계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자료 제출 및 열람요청 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가. 성남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 나. 용자실행(협약) 금융기관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기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 나. 대출기간 내 매분기마다 이자지원 수혜 자격요건(임차지 거주, 무주택, 주거급여 수급 등) 여부 확인
- 다. 임대차 관련 정책자료 활용 등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자산 항목] 임차주택현황, 대출현황(대출일, 대출금액, 대출금리, 연체정보 등), 연소득, 재산현황(주택소유여부 등) 등
- [기타 항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4. 제공 동의의 효력기간 : 제공된 개인 및 기업의 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철회 및 취소시)까지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시) 이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5.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각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를 없을 때에는 용자추천 대상자 선정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위 각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8.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1. 당초 자격요건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성남시 및 용자 취급 금융기관 (이하“농협 성남시지부”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농협 성남시지부의 용자승인이 결정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용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용자대상자 추천 후 대출 미 이행 시 향후 용자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
4.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농협 성남시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이차보전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금액은 환수한다.

| 구분 | 이차보전 중단 사유 | 중단일 |
|----|------------------------------------|--------------|
| ① | 대출실행 후 타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주택에 미전입 | 대출실행일 |
| ② | 성남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 | 주민등록 전출일 |
| ③ | 1주택 이상 보유 | 주택 취득일 |
| ④ | 주거급여 수급 | 주거급여 선정일 |
| ⑤ |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목적물 변경은 제외)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 ⑥ |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 또는 취소 및 환수사유에 해당 | 사유발생일 |

5. 성남시 또는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매월 납입할 것을 약속한다.
7. 용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의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 ④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8. 제7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용자추천을 취소하고 용자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기 지원된 용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성남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위약금 = 성남시 이차보전금 지원금액 + (이차보전금 × 연체금리 × 지원일수 ÷ 365일)

- ② 추천 취소 통보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농협 성남시지부의 현행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9. 매 분기 말 농협 성남시지부의 대출이자 청구 시 이자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확인 후 지급하며, 대출연장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유지 확인 후 연장하므로 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용자금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미상환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 본인은 성남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 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_____ (서명 또는 인)